

한 화족서녀(華族庶女)의 삶을 통해 보는 근대전환기 일본여성의 운명*

이혜경**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는 일본 화족의 서녀였던 야나기와라 박쿠렌이라는 여성을 통해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규율해 왔는지를 조명했다. 특히 계급이 철폐되고 여성도 시민권을 얻어 가는 근대화 과정에서도 음지에서 이중 삼중의 고난을 겪어야 했던 서녀나 첩과 같은 여인들의 삶이 그 시대의 변화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서술했다. 먼저 박쿠렌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법률의 제정·개정을 비롯한 사회의 변화가 그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생애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가장의 결정에 의한 두 번의 결혼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무능력자로 간주된 채 다만 정략결혼의 도구로만 쓰였던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을, 자유연애에 의한 세 번째 결혼의 배경에는 자유연애와 인격이 화두가 되었던 다이쇼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음을 논했다. 이어서 여성단체의 투쟁에 의해 얻은 여성의 정치집회의 참여 허용을 배경으로, 박쿠렌이 가계를 지탱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남편의 선거유세에 참여하고 나아가 창기 해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비로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논했다.

주제어 서녀, 야나기와라 박쿠렌, 가부장제, 근대 일본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부교수

1. 머리말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근대국가로 반돋움한 일본도 문명의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구열강이 제시하는 문명국의 지표에 자신을 맞춰 가야 했다. 헌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그에 부응하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의 하위 법률을 정비해 갔다. 그러나 관습이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사안도 있었다.

일부일처제, 나아가 남녀평등의 문제도 기존의 여러 사정이 얽혀서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이념이었다. 실질적 실현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해도, 최소한 법률상으로 보장되는 것도 긴 곡절을 거쳤다. 천황제와 화족제도(華族制度)의 존속도 일부일처제의 수용에 걸림돌이 되었다. 1889년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으로 일본은 만세 동안 하나의 혈통인 천황에게 국가의 최종 권력이 귀속되는 입헌군주제로 거듭났고, 1884년 ‘화족령’(華族令)에 의해 재편된 귀족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¹ ‘황실전범’(皇室典範)과 화족령은 남성만이 대를 잇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황실전범은 복수시비제(複數侍妃制)를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축첩제를 동반했다.

본 논문은 화족의 서녀로 태어나 세 번의 결혼을 했던 야나기와라 박쿠렌(柳原白蓮, 1885~1967)²이라는 여성을 통해 근대 전환기 격하게 요동쳤던 일본 여성의 운명을 조명하고자 한다. 모든 여성이 시대의 격변을 개인의 경험으로 겪는 것은 아니다. 박쿠렌은 그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흔들

1 1884년 宮内省達無号로 제정되었다가 1907년 皇室令으로 대체되었다. 이 화족령은 1947년까지 존속했다. 종전의 華族과 大名에, 메이지정부에 공을 세운 사람을 새로 보태어, 公-侯-伯-子-男으로 구분했다. 작위는 세습되었다. 1889년 제정된 貴族院令에 의해 30세 이상의 공작과 후작은 전원이, 백-자-남작의 경우는 각각의 작위 내의 互選에 의해 貴族院議員이 되는 특권을 가졌다.

2 결혼 전의 본명은 야나기와라 아키코(柳原燐子)이며, 죽을 때의 이름은 세 번째 남편의 성을 딴 미야자키 아키코(宮崎燐子)이다.

렸고 또 기꺼이 변화했다. 박쿠렌이 겪은 인생의 파도는 결혼 상대자의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첫 번째 남편은 개인적으로는 봐줄 만한 것이 없었으나 화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결혼 상대자가 되었다. 두 번째 남편은 무학에 25세 연상이었지만 돈 많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세 번째 남편은 가난하지만 도쿄대 법대 출신의 사회운동가였다. 화족, 부유한 사업가, 사회운동가라는 세 남편의 사회적 라벨이 격변했던 사회의 각 시기의 특징을 대변하는 듯하다. 앞의 두 결혼은 박쿠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정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자유연애의 결과였다.

이 글은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삶을 통해 시대의 변화가 여성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읽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계급이 철폐되고 여성도 시민권을 얻어 가는 근대화 과정에서도 음지에서 이중삼중의 고난을 겪어야 했던 서녀, 첩과 같은 여인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조명하려는 의도에서 박쿠렌을 선택하였다. 첩인 생모에게서 태어나 화족서녀로 자란 박쿠렌의 생애는 화족이 누릴 수 있는 영화의 허실을 여실히 보여 주면서 동시에 극단적인 남성중심사회에서 서녀가 다뤄지는 사회적 맥락을 가감 없이 보여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끈질긴 생명력과 용기를 가진 여인의 제대로 된 생존기도 보여 줄 것이다.

박쿠렌은 일본의 정형시인 ‘단가’(短歌)로 등단한 ‘가인’(歌人)이었다. 현재 그의 통명(通名)이 된 박쿠렌은 필명이다. 이 글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 근대 전환기 일본의 법률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로 바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므로, 박쿠렌의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는다. 박쿠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가인으로서 그녀의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와 드라마틱한 그녀의 삶을 소개하는 전기류로 나눌 수 있다.³ 한국

3 박쿠렌의 歌를 다룬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中西洋子(2012), 「柳原白蓮における歌の姿容と到達: 最終歌集『地平線』をめぐる」, 『目百大学 人文学研究』8; 中西洋子(2023), 『流転の月: 柳原白蓮ノート』, 角川書店; 深町純亮(1991), 박쿠렌의 생애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永畑道子(1882), 『恋の華・白蓮事件』, 新評論; 深町純亮(1991), 「柳原白蓮の生

에서는 박쿠렌이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다.⁴ 이 글은 박쿠렌의 생애에 관한 기존 글들에 의지하면서,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조직하고 규율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녀의 삶이 사회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소개한다.

2. 화족서녀의 세 번의 결혼: 야나기와라의 일생⁵

박쿠렌은 1885년 도쿄에서,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1850~1894) 백작과 게이샤 출신의 첩이었던 료(りょう)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키미쓰의 누나는 메이지천황의 세 번째 측실로서 훗날 다이쇼천황이 되는 아들을 낳았다. 사키미쓰는 메이지 정부에서 외무대승(外務大丞), 주러시아 공사, 원로원 의장, 추밀고문관 등 고관을 지낸 공경(公卿) 출신 화족이었다. 어머니 료는 메이지유신으로 몰락한 무사의 딸이었다. 료는 언니와 함께 게이샤가 된 직후 사키미쓰의 눈에 띄어 16세에 사키미쓰의 첩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사키미쓰의 본가 근처에 살면서 박쿠렌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아이는 사키미쓰의 본가로 들여지고 료는 박쿠렌을 낳고 3년 뒤에 21세의 나이에 병사한다. 박쿠렌은 어느 시기까지 친모의 존재를 모르고 성장하게 된다.

사키미쓰와 정실 사이에는 장남과 장녀가 있었고 박쿠렌은 세 번째 아

涯』, 『エネルギー史研究: 石炭を中心として』 15; 阿賀佐圭子(2016), 『柳原白蓮: 燐子の生涯』, 九州文学社.

4 김영경(2023), 「한국 근대소설과 근대 제도로서의 離婚: 廉想涉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99는 이혼을 주제로 한 염상섭의 소설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에서 주인공 '덕순'이 공감하는 'B여사'가 柳原白蓮임을 확인하고 박쿠렌과 박쿠렌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야나기하라'로 표기하고 있다).

5 이 장에서 소개하는 박쿠렌의 일생은 기본적으로 阿賀佐圭子(2016), 『柳原白蓮: 燐子の生涯』, 九州文学社에 의한다.

이로 호적에 오르게 된다. 아이는 얼마 안 있어 당시 화족의 습관대로 시골 가정의 유모 품에서 크게 된다.⁶ 6세에 본가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유모가 엄마인 줄 알고 자란 박쿠렌은 이 시점부터는 사키미쓰의 정실이 엄마인 줄 알고 자란다. 7세에 소학교에 입학하나 9세에 먼 친척인 기타고지 요리미쓰(北小路隨光) 자작의 양녀로 가게 되어 소학교도 전학하게 된다. 기타고지가에는 아이가 없어서 사키미쓰의 동생이 양자로 가 있었는데, 요리미쓰가 하녀와의 사이에서 아들 스케타케(資武)를 낳은 뒤 양자관계를 해소하고 그 대신 박쿠렌을 스케타케의 처로 삼기 위해 입양한 것이었다.⁷ 박쿠렌 자신은 스케타케의 정혼자라는 것을 모르는 채 기타고지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 사키미쓰는 박쿠렌이 9세 때인 1894년에 44세로 사망한다. 박쿠렌은 12세에 화족여학교⁸에 입학하나, 2년 뒤에 기타고지가의 경제적 문제로 퇴학하게 된다. 이 시기에 비로소 박쿠렌은 자신이 스케타케의 정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스케타카에게 “첩자식 주제에”라는 말을 듣고 야나기와라가에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생모가 아닌 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14세의 나이에 박쿠렌은 스케타케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는다. 스케타케는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데다 심성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 결혼생활이 원만할 리 없었다. 19세에 박쿠렌은 기타고지가에 아들을 남겨두고, 첫 번째 이혼을 한다.

야나기와라가에 돌아온 박쿠렌은 3년 동안 집안의 은신처에서 반유폐 생활을 한다. 결혼했다 돌아온 여자(出戻り) 즉 소박녀는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년 뒤인 1908년 학교에 가서 더 배우고 싶다는 박쿠렌의

6 '시골아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토리코'(里子)라는 풍습이다.

7 어렸을 때 부모가 결혼약속을 하는 것으로 일본어로는 '이이나즈케'(許嫁)라고 한다. 박쿠렌의 경우에는 단순히 결혼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갈 집에 여려서 가서 거기에서 성장하는 것이니 '민머느리'와 비슷한데, 일본에는 '민머느리' 개념은 없는 듯하다. 일단 시가로 온 어린 머느리는 시가의 성을 쓰며 양녀가 되기 때문이다.

8 현 学習院女子中等科.

호소에, 박쿠렌은 22세의 나이로 동양영화여학교(東洋英和女學校)⁹에 편입하게 된다. 14세에 화족여학교를 퇴학한 지 8년 만에 학교로 다시 가 어린 동급생 속에 섞인 것이다. 이 시기 단가 모임에도 입문한다. 동양영화여학교는 캐나다 감리교회(Methodist Church)가 과견한 여성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로, 일본문부성의 규정에 따른 ‘양처현모’를 기치로 한 여성교육¹⁰ 대신 영어교육과 기독교교육을 시행했다. 박쿠렌은 2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1910년 졸업한다.

1911년 2월 야나기와라가는 박쿠렌을 재혼시켰다. 이번 상대는 25세 연상의 이토 덴에몬(伊藤藤右衛門)이라는 규슈 사람이었다. 무학의 탄광노동자 출신으로, 입신하여 규슈의 탄광왕이라 불리게 된 부호사업가였다. 상처한 직후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으나 첩과의 사이에는 딸이 있었고, 방탕한 생활로 생식능력을 잃은 상태였다. 나이나 신분, 교양 모두 박쿠렌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대였기 때문에, ‘화족의 영애가 매물로 나왔다’는 가십거리가 되고, 이 혼사에 막대한 돈이 움직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야나기와라가의 가장인 박쿠렌의 오빠는 돈이 필요했고 덴에몬은 명문화족의 배경이 필요해서 이루어진 혼사였다는 것이 당시의 정평이었다.

애정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박쿠렌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흔들렸다. 게다가 이토가에는 오랫동안 주부로 터를 잡고 있던 하녀 수장(女中頭)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박쿠렌은 주부의 역할도 할 수 없었다. 박쿠렌이 할 수 있는 일은 혼자만의 방에 고립되어 책을 읽거나 단가를 짓는 일이었다. 박쿠렌은 이 시기 단가를 가집(歌集)에 투고하면서 처음으로 필명 ‘박쿠렌’을 사용한다. 유부녀로서 공상의 연애를 노래하는 시들이었으므로, 단가의 스승으로부터 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신

9 현 東洋英和女学院高等部.

10 일본에서 ‘양처현모’ 또는 ‘현모양처’가 여성교육의 모토로 자리 잡은 것은 메이지 초기 때부터이며, 1899년 高等女學校令의 공포와 함께 ‘현모양처’가 국가적 교육목표로 자리 잡는다. 小山静子(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pp. 35-50.

양하던 니치렌(日蓮)에 점 하나를 보태 박쿠렌(白蓮)을 필명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박쿠렌은 1919년 「지만외도」(指鬘外道)¹¹라는 희곡을 『해방』(解放)이라는 잡지에 발표했다. 『해방』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1878~1933)가 제창한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기치로 모인 여명회(黎明會)의 기관지였다. 『해방』측에서는 박쿠렌의 희곡이 반응이 좋아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그 주필이 박쿠렌을 방문했는데, 그는 박쿠렌보다 7세 연하인 27세의 도쿄제대 법과생 미야자키 류스케(宮崎龍介, 1892~1972)였다. 그는 쑤원(孫文)을 지원하던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의 장남으로, 당시 신인회(新人会)를 결성해 학생운동도 하고 있었다. 유부녀 박쿠렌은 류스케와 연애를 시작하고, 1921년 박쿠렌은 임신한다. 간통죄가 있던 시대였다. 류스케는 화족출신의 ‘부르주아 부인과의 연애놀이’가 사상의 적으로 심판되어 『해방』의 편집인에서 해임되고 신인회에서도 제명된다. 박쿠렌은 이른바 ‘박쿠렌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출과 공개 절연장의 방법으로 덴에몬과 이혼한다. 이 일로 박쿠렌의 오빠는 귀족원의원을 인책사임¹²하고 박쿠렌은 화족에서 제적된다. 류스케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은 2년 뒤였다. 그 사이 친정에 끌려가 연금생활을 하며 아들을 낳았고, 간토대지진(1923년 9월 1일)을 계기로 풀려나 비로소 류스케와 합하게 되었다.

류스케는 도쿄제대 졸업 후 변호사가 되나 고등학교 때 발병했던 결핵이 재발해 활동을 못하고 투병생활에 들어간다. 아버지 도텐이 쑤원을 지원

11 지만(指鬘)은 손가락(指)으로 만든 화환(鬘)이다. ‘만’(鬘)은 산스크리트어 음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화륜(花輪), 영락(瑩珞), 염주(數珠) 등이 이에 속한다. 「지만외도」(指鬘外道)는 유부녀를 연모한 젊은 남자가 백 사람의 손가락환(꽃다발처럼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든 원)을 가져오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겨 99인의 손가락을 베었는데, 100번째 붓타를 만나 잘못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했다는 이야기다. 불교를 제재로 하여 애욕과 고뇌를 다뤘다.

12 박쿠렌사건이 국수주의자들을 직접행동하게 만들어, 우익단체인 ‘黑龍會’로부터 끈질긴 사임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永畑道子(1882), 『恋の華 白蓮事件』, 新評論, p. 229.

하면서 만든 막대한 빚까지 있었다.¹³ 박쿠렌은 류스케가 누워 있던 3년 동안 글을 쓰며 가게를 지탱했다. 한편으로 노동총동맹의 협력을 얻어 유곽에서 탈출한 게이샤들의 자유폐업을 돕는 일을 했고, 한편으로 사회운동을 하며 은신처를 찾는 중국유학생이나 인도유학생에게도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도 지속했다.

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전 4일 전에, 학도로 출정했던 아들이 전사한다. 박쿠렌은 자모회(悲母の会)를 결성하여 전국을 순회하고, 이어 외국과도 연대하여 세계연방운동부인부(世界連邦運動婦人部)로 발전시키며 평화운동을 했다고 한다.

3. 사회적 무능력자로 취급된 여자의 결혼과 이혼

박쿠렌의 출생부터 세 번째 결혼을 할 때까지의 시기는 메이지 시대(1868~1912) 중기에서 다이쇼 시대(1912~1926)에 걸쳐 있다. 근대국가의 체제를 갖춰 가던 일본은 민법과 형법 등 근대적 법률체제를 정비해 갔다. 화족이며 여자이며 서녀였던 박쿠렌의 운명 역시 당시 제정된 법률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그녀의 운명을 좌우한 것은 화족령이었다.

화족제도는 메이지정부 출범 이후 종전의 특권을 잃은 공경과 다이묘(大名)를 대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884년 ‘화족령’에 의해 기존의 공경과 다이묘에 유신의 공신들이 더해져, 공에 따라 공-후-백-자-남의 작위를 수여하는 화족제도 즉 귀족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화족령에 의해 화족의 가독(家督) 즉 가장은 궁내대신¹⁴의 인허를 받아 가범(家範)을 스스로 정할

13 미야자키 도텐은 1922년 12월에 병사한다.

14 宮内省은 古代에는 律令制하에서 八省의 하나로서 궁정의 서무를 담당했다. 근대의 宮内省은 1869년, 고대의 궁내성을 본따서 太政官制하에서 시작된 조직으로, 당초의 장관은

수 있었다. 가독은 재산처분뿐 아니라 가족 내의 결혼과 상속, 양자 등에 대해 독자의 규정을 만들 수 있었고, 가법을 위반했을 때는 규정에 의거해 궁내대신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화족제도는 1947년 일본국헌법의 실행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가법의 규정 아래서 화족의 구성원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화족의 가독전제는 이윽고 가부장제를 통해 평민에까지 확대되어 간다. 1898년 민법에는 ‘가’(家)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가를 중시하고 ‘가부장 전제’¹⁵를 허용했다. 호주권이 설정되어 호주가 가독(家督)과 가산(家産)을 상속하고 남편이 혼외 관계에서 얻은 아이를 처와 의논할 필요 없이 단독의 결정에 의해 서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했다.¹⁶ 장자상속을 규정하고,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아내에게만 간통죄를 적용하고, 나아가 재산의 관리에서 아내의 무능력을 명시하고, 자식의 친권을 아버지에게만 인정했다.¹⁷ 여자의 일생은 가독인 아버지-남편-자식에게 차례로 예속되어 부양과 지배를 받는 생활로 점철되었다. 여자가 사회적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공적 활동에서 배제되고 집안에 갇혀 “아들을 낳는 도구”로 기능하는 존재였다는 점에서는 처도 첩과 다르지 않았다.¹⁸ 에도시대에 이미 가명(家名), 가록(家祿), 가업(家業)을 하나로 하여 상속하는 단독상속제가 정착되고 가장으로서의 지위가 가내통제권을 주군으로부터 부여받음으로써 보장되었다.¹⁹ 메이지시대 가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호적’을 축으

宮内卿이었는데, 1885년 이후에 内閣制度하에서는 궁중과 행정의 관청이 구별되어, 궁내성의 담당자 宮内大臣은 내각의 각료가 되지 않고 독립되었다. GHQ 점령하인 1944년에 축소재편되어, 1947년에 宮内府, 1949년에 현재의 宮内庁으로 되었다.

15 이노우에 키요시(2004), 성해준·김해준 옮김, 『일본여성사』, 어문학사, p. 299.

16 早川紀代(1998), 『近代天皇制とジェンダー：成り立ち期の一つのロジック』, 青木書店, p. 5.

17 久留島典子·長野ひろ子·長志珠絵 編(2015), 『ジェンダーから見た日本史』, 大月書店, pp. 170-171.

18 大竹秀男(1977), 『家と女性の歴史』, 弘文堂, p. 223.

19 大竹秀男(1977), p. 220.

로 했다. 1871년 호주법이 공포되어 화족, 사족, 평민 할 것 없이 가마다 호적에 기재했다. 호주의 교체는 가독상속에 의해 행해졌다. 1873년 화·사족(華士族)의 가독상속법이 공포되어 적장남자(嫡長男子)의 우선상속권이 제정되었고,²⁰ 1875년에는 화·사족의 가독상속법이 평민에게도 적용되었다. 호주는 가족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을 가졌고 가족은 호주에 예속된 상태였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자는 독립한 개인으로 인정받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능력자로 취급되었다.²¹

한편, “첩을 취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화족사회를 보면 되고, 또 화족사회를 논하면서 첩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²²고 할 정도로, 취첩은 메이지 시기에 들어서도 화족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취첩이 화족만의 일은 아니었다. 이미 에도시대부터 상급에서 하급까지의 무사나 조닌(町人) 가운데에도 첩을 두는 습관이 있었음이 확인된다.²³ 다만 앞 장에서 박쿠렌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첩의 존재가 웅변하듯이, 화족에게 첩은 너무나 일상적인 존재였다. 화족의 결혼은 가독의 승인과 궁내성의 승인이 필요했으므로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안과 집안의 일로 진행되었다. 처를 선택할 때는 “가(家)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상을 첫 번째 기준으로 고려”²⁴해야 했지만, 첩은 개인의 선택이었고 수의 제한도 없었으므로, 남자 화족이 첩을 얻는 데 제약이 되는 것은 경제사정 정도였다. 첩에게서 후사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인 서비스에 정서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데다 첩이 있어도 계속 더 젊은 첩을 추가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강력한 남성 본위의 제도였다. 한편에서 첩에게서 후

20 大竹秀男(1977), p. 239.

21 大竹秀男(1977), pp. 244-245.

22 森岡清美(2002), 『華族社会の家の戦略』, 吉川弘文館, p. 259; 石島亜由美(2023), 『妾と愛人のフェミニズム』, 青弓社, p. 20에서 재인용.

23 石島亜由美(2023), p. 48.

24 森岡清美(1999), 『明治初期の華族社会における妾』 『淑徳大学社会学部研究紀要』 33, p. 100.

사를 얻으면 “처는 아이가 없어도 쫓겨나지 않”았으니, 취첩제도는 가 일족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것이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메이지초기 화족 사회에서의 취첩은 자연스러운 “습속”이었다.²⁵

첩은 1870년 제정된 형법신율강령(刑法新律綱領)에 의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혼인제도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 신율강령은 이전부터 뿌리 깊게 존속했던 취첩의 습관에 근거한 것이었다.²⁶ 신율강령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친족 정도를 오등(五等)으로 표시했는데, 처와 첩은 똑같이 이등친(二等親)으로 규정되었다. 자식은 달라서, 처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일등친이었고, 첩의 아이들은 삼등친이었다. 그러나 가령 처와 첩이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과 같은, 남편의 친족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때 첩에게는 처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했다. 역으로 남편이 처첩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의 경우보다 첩의 경우는 가벼운 형벌이 내려졌다.²⁷ 이처럼 처와 첩의 차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처와 첩이 남편의 등친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무엇보다 첩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또한 특이했던 이 법률은 오래지 않아 개정된다.

1882년에 신율강령은 새로운 형법으로 대체되고 표면상으로 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만두기까지는 ‘폐첩론’이라 불렸던 논쟁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첩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여 결국 폐지까지 이끈 사람들은 계몽운동단체로 유명한 메이로쿠샤(明六社)였다. 메이로쿠샤의 동인들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1847~1889), 쓰다 마미치(津田真道, 1829~1903) 등은 첩제를 폐지하고 서구적 부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대국가로서의 체면을 유

25 森岡清美(1999), p. 100. 森岡清美는 이 논문에서 메이지 초기에 습속이었던 ‘취첩’이 중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후기에 이르면 해체되기 시작한다고 논한다.

26 森岡清美(1999), p. 101.

27 森岡清美(1999)에 의하면, 첩의 지위를 높였던 이 법령은 첩도 법제도 안에 넣어 정절의 의무를 지우고 처와 남편의 총애를 경쟁하게 했다는 점에서, 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자와는 남녀 모두 자유평등한 인간이므로 봉건적인 남편과 아내의 구분을 없애고 일부일처의 온화한 시민적 가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²⁸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의 진보적 사상은 널리 수용되기 전이었고, 남계혈통을 중시하는 일본전통을 지키기 위해 첩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였다. 여론은 첩제 폐지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는 불평등조약의 개정 문제를 고려하여 첩제를 폐지한다.²⁹ 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첩은 법률상 없는 존재가 된다. 호적에서도 제외된다.³⁰ 그러나 첩이 실제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존재가 여전히 존속했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지만, 첩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즉 첩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로 취급되었지만 아버지의 인지에 의해 입적이 가능했다.³¹ 첩은 남편과 법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이 되니 “첩의 간통죄가 없어진 것”이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었을 뿐, “실질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었어도 크게 저항 없이 첩제의 폐지가 가능”했던 것이다.³² 첩의 존재는 형법에서 사라지지만, 황실전범과 민법에서 서자제도가 온존함으로써 일부일처제는 실현되지 못한다.³³

남자의 성생활과 번식을 무한히 인정하는 법률 덕분에, 박쿠렌은 서출이면서도 본가로 들어가 서녀인 줄 모르고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박쿠렌의 생모는 시대를 잘못 만난 무사의 딸로 태어난 탓에 게이샤가 되었다가 누군가의 첩이 되었다. 아이를 낳았지만 자신은 남편의 호적에 오를 수 없었고 자식을 키울 수도 없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한 아버지의 몰락으로 어

28 이노우에 키요시 지음(2004), 성해준·김해준 옮김, pp. 307-310.

29 大竹秀男(1977), p. 251.

30 구형법 시행 이전에 호적에 등록된 첩은 그대로 첩의 신분을 유지했다.

31 大竹秀男(1977), p. 249.

32 大竹秀男(1977), p. 251.

33 早川紀代(1998), p. 5.

린 나이에 게이샤 시장에 팔려 나갔고, 첩으로 팔려 갔으며, 마지막에는 자식은 낳았지만 어머니는 되지 못한 채, 나이 많은 남자의 성적 대상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는 도구로 사용되고 짧은 생을 마친 것이다.

화족의 서녀로서 박쿠렌은 생모의 존재를 14세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어린 박쿠렌은 자신이 생모라고 생각하던 아버지의 정실부인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이 되어 버린다. “첩이란 본처에게 가장 쓰라린 슬픔의 근원”³⁴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녀는 첩의 자식인 자신의 존재를 자랑스러워할 수 없게 된 동시에, 자신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기댈 수 있었던 생모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잃게 된다. 그 상황에서 지능도 떨어지고 폭력적인 “짐승과 같은”³⁵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더구나 그 모자란 남자는 자신 역시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고분고분하지 않은 박쿠렌을 향해 “첩의 자식 주제에 잘난 척한다”고 박쿠렌의 출생을 까발렸다. 박쿠렌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박쿠렌이 결혼 이듬해에 아이를 낳아 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23살의 중학생이었다.³⁶ 결혼과 이혼 모두 가장의 허락이 필요했던 박쿠렌이 첫 번째 이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티 나게 모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쿠렌은 친정의 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면서, 이복 언니에게 결혼생활의 불행을 끈질기게 호소함으로써 그녀의 중재로 이혼 허락을 얻어낸다.

법적으로 이혼은 허락되었으나 관습적으로는 여전히 죄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친정으로 돌아간 박쿠렌은 3년 동안 출입이 통제된다. 그 후 박쿠렌은 정치자금에 필요한 가장인 오빠에 의해, 돈은 많지만 25세인 박쿠렌보다 곱절이나 나이가 많은 무학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막번시대에는 신분질

34 柳原白蓮(2022), 『白蓮自叙伝・荊棘の実』上(電子書籍), デイスクワアー・トウエンテイワ
ン, pp. 146-148. 『荊棘の実』는 1928년 출간된 자전적 소설로, 하나나 첩의 이름은 실명
그대로이나 가족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35 柳原白蓮(2022) 上, p. 162.

36 柳原白蓮(2022) 上, p. 143.

서 유지를 위해 신분이 다른 사람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었으나, 1871년 사민평등의 기치 아래 화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서로 혼인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박쿠렌이 화족이 아닌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할 수 있게 한 법률이었다. 첫 번째 결혼 때는 결혼 상대 개인보다 집안과의 연결이 중요해서 맺어진 인연이었으나, 두 번째 결혼은 신분보다 돈이 중요해진 시대를 반영하는 결혼이었다.

4. ‘박쿠렌 사건’: 여론을 이용한 이혼

두 번째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결혼이었기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혼은 다른 이유로 며칠에 걸쳐 대서특필되었다. 이혼하기 전에 박쿠렌은 미야자키 류스케와 이른바 ‘간통’을 하고 임신을 했다. 남편 쪽에는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아도 처에게는 적용되었으며 처의 간통 상대도 처벌되었다. 간통은 친고죄였다.³⁷ 이혼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뿐 아니라 박쿠렌 친가의 허락도 필요했다. 박쿠렌은 류스케와 상의 끝에 남편에게 보내는 ‘절연장’을 신문에 공개했다. 여론전을 편 것이다.

‘절연장’이 실린 날인 1921년 10월 22일 아침, 『오사카아사히 신문』 조간에 “함께 10년을 산 남편(良人)을 버리고 박쿠렌(박사 정부(情人)에게 달려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같은 날 저녁 같은 신문 석간에 ‘절연장’이 실렸다. 박쿠렌의 절연장을 실은 신문과 경쟁했던 『오사카마이니치 신문』은 남편 덴에몬의 입장을 4회에 걸쳐 연재하는 맞수를 두었다. 신문사에는 이 사건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독자로부터 투고가 밀려들었다고 한다. 박쿠렌과 남편 쪽이 폭로하는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의 결혼이 어떤 것이었

37 永畑道子(1882), 『恋の華・白蓮事件』, 新評論, pp. 205-208에, 동시대 남성이 유부녀와의 간통 때문에 유부녀의 남편에게 위협당하자, 세상과 마주할 굴욕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박쿠렌은 절연장에서 “최선의 이성과 용기가 명하는 바”에 따라 이혼한다고 운을 떼며, 지난 10년 동안 결혼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모두 헛되이 끝난 이유로 먼저 텐에몬의 복잡한 여자문제를 들었다. 텐에몬을 “섬기는 많은 여성 가운데는 단지 주종관계만이 아닌 존재”도 있었다고 하니, 다수의 첩 외에 집안의 하녀와도 문란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첫째와도 관련이 있는데 박쿠렌은 텐에몬의 집에서 주부의 일도 할 수가 없었다. 하녀 수장(女中頭)이 텐에몬의 허가하에 박쿠렌이 오기 전부터 주부의 실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애정은 없고 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고통 속에서 “애정 없는 결혼이 낳은 불행과 이 불행에서 얻은 고통 때문에” 박쿠렌은 체념하며 죽을 생각까지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랑에 의해 부활하려고 한다”며³⁸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금까지 당신에 대한 죄 아닌 죄를 범할 것을 두려워했다. 이제 지금은 나의 양심이 명한 대로 부자유한 기왕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할 시기에 임했다. 허위를 버리고 진실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편지에 의해 나는 전력을 다해 여성의 인격적 존엄을 무시하는 당신에게 영구한 결별을 고한다. 나는 나의 개성의 자유의 존귀함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당신 곁을 떠난다. 긴 시간 양육해 준 배려에 깊이 예를 올린다.³⁹

이 절연장에는 류스케와 더불어 류스케와 박쿠렌의 사이를 지지하는 신인회 동료의 가필이 있었다고 하는 만큼,⁴⁰ 인도주의와 이상적 사회주의

38 「絶縁状」『大阪朝日』夕刊, 1921.10.22. 永畑道子(1882), pp. 18-19에서 재인용.

39 「絶縁状」『大阪朝日』夕刊, 1921.10.22. 永畑道子(1882), p. 19에서 재인용.

40 中西洋子(2023), 『流転の月: 柳原白蓮ノト』, 角川書店, p. 144. 박쿠렌의 초고를, 류스케와 함께 박쿠렌과 류스케의 사이를 지지하는 신인회 동료 赤松克麿가 첨삭했다고 한다.

의 입장에서 계몽운동을 하던 신인회의 이념도 엿볼 수 있다.⁴¹ 양심에 따라 “부자유”를 “개조”하고 “허위를 버리고 진실에 나아가”는 일이기에 남편을 배신하는 것이 “죄 아닌 죄”라고 표현된다. “허위를 버리고 진실”을 실천하는 것, 나아가 “개성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남편에게 충실한 일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박쿠렌은 “양육” 받아 온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고 진실하게 살 것을 선언한다.

여자 쪽에서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일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당사자인 자신이 알기 전에 신문지상에 공개되는 일을 당한 텐에몬 쪽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박쿠렌이 “불유쾌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리”가 없다고 첫 대응한다. “세간에서 가인인가 뭔가로 불릴 정도로 공부도 하게 했고,” 그녀가 하고 있는 “문학에 대해서 [자신은] 조금도 모르므로 한 발 빼고 잔소리 하나 하지 않았고,” 용돈도 충분히 줬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도 “원래 내가 간섭하지 않으므로 그 남자 따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다. 그 대신 그녀도 내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서로 세계가 달라도 겸손하게 가는 것이 부부 아닌가.”⁴²라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남녀가 결혼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달랐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반응이다. 기대하는 것이 달랐고 적어도 처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처는 ‘애정 없는 결혼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처가 불행한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 뒤에 텐에몬은 본격적인 반격을 펼쳤다. 『오사카마이니치 신문』은 텐에몬의 매제의 허락하에 텐에몬에게 사후 허락을 받는 형태로 「절연장을 읽고 하나코⁴³에게 보냄」이라는 제목의 글을 4회에 걸쳐 연재했다. 기자가 작성한 글이지만, 부부 사이를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극히 사적인

41 新人會에 관해서는 H. 스ミス 著(1978), 松尾尊兌·森史子 共譯, 『新人會の研究: 日本學生運動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42 『九州日報』, 永畑道子(1882), pp. 23-24에서 재인용.

43 박쿠렌의 이름이다.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었으니, 그 알맹이는 텐에몬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 첫머리는 박쿠렌의 처지를 알려 주는 내용이었다.

[너는] 교토의 기타고지라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화족에게 시집가서, 가난한 생활에서 도망치듯 야나기와라가로 돌아왔다. 소박녀지만 가난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첩의 배에서 나온 자식으로 엄마는 게이샤였다.

화족이지만 자신과 같은 평민에게 시집은 이유는 이처럼 흠결 많은 여자여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첫 번째 남편이 “첩의 자식 주제에”라고 말했듯이, 텐에몬은 ‘첩의 자식인데다 소박녀 주제에’라고 말하는 것이다. 박쿠렌은 처음부터 애정이 없었고 노력해도 애정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텐에몬은 “너는 귀족의 딸이다, 존경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평민인 나는 피와 땀으로 오늘날의 지위를 얻었”다고 자존심을 세우며, 자신이야말로 박쿠렌과 결혼해서 괴로웠고 박쿠렌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후 “나의 집은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호소했다.⁴⁴

너는 박쿠렌이라는 이름의 가인이다. 석탄 캐는 자의 처이면서 그 아호를 이토가의 진흙밭에 있어도 나아말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붙인 그 자존심! 나는 지난 십 년 동안 너의 히스테리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가.⁴⁵

‘흰 연꽃’이라는 의미의 호 ‘박쿠렌’(白蓮)에 대해 박쿠렌 자신은 자신이 신앙하던 니치렌(日蓮)에 점 하나를 보탠 것이라고 밝혔는데,⁴⁶ 이토가의 진

44 「絶縁状を讀みて、燐子に与ふ」, 『大阪毎日』, 永畑道子(1882), p. 34에서 재인용.

45 「絶縁状を讀みて、燐子に与ふ」, 『大阪毎日』, 永畑道子(1882), p. 31에서 재인용.

46 中西洋子(2023), p. 34.

혹발에서도 고고하겠다는 의미로 붙였다는 것은 텐에몬의 해석일까? 사실 이야 어쨌든 텐에몬 자신이 신분을 비롯해 무학인 점 등 때문에 박쿠렌에게 가진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박쿠렌에게 맡기지 않고 ‘오사키’라는 하녀 수장에게 주부일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격렬한 어조로 반론했다.

하녀는 아무리 많아도 길게는 머무르지 않는다. 한 사람 정도는 일생 집에 붙어 있어 주는 충실한 하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사키가 그러하다. 옛날부터 있어서 성실하고 안팎이 같은 여자여서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다. 너는 오사키를 맘에 들어하지 않았다 너는 이른바 아가씨로 자라서 주부로서는 어떤 경험도 능력도 없는 일을 주제로 올려, 오사키가 집 안을 관리하는 것을 보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오사키에 대해 광기 섞인 질투를 부리고, 매일 병이라고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⁴⁷

어떤 이들에게는 텐에몬의 답서가 박쿠렌에 대한 의미 있는 반박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처음 박쿠렌의 절연장이 나간 뒤의 반응은 박쿠렌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는 동정의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텐에몬의 답서가 공개된 뒤에는 반응이 달라져 박쿠렌의 행동에 찬성하는 편지 43통, 반대 55통, 중립 25통이라고 오사카야사히 신문은 소개했다.⁴⁸ 법적으로 여자를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니, 실제로 처를 자신과 대등한 배우자로서 존중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텐에몬은 박쿠렌에게 집안의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다. 평민가라면 처에게 노동력을 기대했겠지만, 텐에몬이 박쿠렌에게 기대하는 것은 인형처럼 꾸미고 사람들에게 내보임으로써 자신 옆에서 자신을 빛내 주는 일이었을까?⁴⁹ 텐에몬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일

47 「絶縁状を讀みて、燐子に与ふ」, 永畑道子(1882), pp. 33-34에서 재인용.

48 永畑道子(1882), pp. 27-28.

49 결혼식 축하연에서 박쿠렌의 기모노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모

은 박쿠렌에게 돈을 쓰는 일뿐이었을까? 텐에몬은 박쿠렌의 책의 출판비로 얼마를 썼다든지 기타고지가의 박쿠렌의 아들에게 매달 학비를 보내고 있다든지 하는 공치사를 썼다.⁵⁰

그러다 텐에몬은 돌연 신문 연재를 중단하고 박쿠렌의 오빠와 이혼에 합의했다. 아마도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짐작한다. 가장 큰 압력은 다이쇼천황의 사촌인 박쿠렌을 불륜의 명목으로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⁵¹

1873년에 처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법적인 무능력자인 처는 이혼하는데 아버지나 남자형제 등 법적 후견인의 결정이 필요했다.⁵² 박쿠렌의 첫 번째 이혼은 몇 년에 걸쳐 친정식구에게 호소함으로써 가능했다. 두 번째 이혼은 ‘여론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에 의해 가능했다.

박쿠렌이 텐에몬과의 이혼을 위해 여론전을 편 것은 ‘자유연애’나 ‘남녀교제’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해서였다. 다이쇼기에 부부 중심의 가정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또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늘어나고 그 여성들을 독자로 하는 여성잡지들이 등장하면서, 그 잡지들이 ‘연애결혼’을 중요한 이슈로 다뤘다.⁵³ 『부인공론』(婦人公論)⁵⁴이라는 잡지의 기사는 1916년 이후 이혼에 의한 ‘가정비극’을 막기 위해 결혼제도의 변혁을

습을 보이려고 텐에몬에게 요구받았다고 한다. 永畑道子(1882), p. 140.

50 永畑道子(1882), p. 34.

51 永畑道子(1882), pp. 42-43.

52 이노우에 키요시 지음(2004), 성해준·김해준 옮김, p. 267.

53 デビット・ノッター(2002), 「恋愛至上主義のアクセプタビリティへの一考察: 大正期における恋愛結婚言説とその変容」, 『ソシオロジ』 45(3).

54 1916년 창간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 현존하는 여성지로는 1903년 창간된 『婦人之友』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되었다.

다루면서, ‘연애결혼’과 ‘부부의 연애 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⁵⁵ 특히 박쿠렌사건이 신문에 실리기 약 한 달 전에 『부인공론』에 ‘근대의 연애관’이라는 기사가 20회에 걸쳐 연재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글의 저자는 집안의 결정에 의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일 보 진보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매결혼에 대해서도 저항했다. 중매결혼을 통해서 부부간 애정이 생길지라도 그 애정이란 “어떤 인격적 정신적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육체의 성교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강간결혼, 화간결혼, 매음결혼”⁵⁶이라는 격렬한 언사로 중매결혼을 비판하며 연애결혼을 주장했다. 다이쇼기 교양주의의 분위기에서 남녀교제는 ‘교양’과 ‘인격의 향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⁵⁷ 실제로 박쿠렌은 세 번째 결혼에서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다른 인격과 배우자로서 맺어질 수 있었다.

5. 하나의 인격으로서: 다른 여성을 이용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회활동

두 번째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애정도 얻지 못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었던 박쿠렌은 비바람 피할 곳 없는 허허벌판에 나앉은 기분이었다. 특히 주부의 권리를 둘러싸고 ‘오사키’라는 하녀수장과 충돌한 후 남편에 의해 잠시 집에서 떠나 있도록 조치된 후에는 언제 남편에게 내쳐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점점 커져 갔다. 하녀 수장이 자신의 사정으로 이토가를 나간 뒤, 박쿠렌은 스스로 나서서 19살의 처녀를 남편의 첩으로 들인다. 그 속내를 1928년 발표한 자전소설 『형극의 열매』(荊棘の實)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55 데비트·노ッター(2002), p. 57.

56 厨川白村(1921.9.30.~10.29.), 「近代の恋愛観」 『婦人公論』, 데비트·노ッター(2002), p. 60에서 재인용.

57 데비트·노ッター(2002), p. 65.

지금 겨우 오사키는 아마모토⁵⁸의 집에서 나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아마모토의 보증하에 놓인 사람인 이상, 그에 따른 불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내게 오는 남편의 사랑은 오사키에게도 미치지 못하니 나 아닌 여자에게 남편의 사랑이 옮겨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만약 오사키보다 사랑받는다면 나는 그 여자의 그늘에서 편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⁵⁹

스스로의 주인일 수 없는 여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중층적으로 보여 주는 고백이다. 박쿠렌은 “아무리 당신의 첩이라고 해도 … 표면적으로는 봉공인(奉公人)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새로 첩을 들이겠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남편에게 “내가 들인게 아니라 네가 들였으니 첩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새 첩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대답을 듣는다. 박쿠렌은 직접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 먼저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들인 다음 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취했다. “태생도 좋고 성장도 좋아” 이전의 하녀 수장처럼 주인의 처를 무시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⁶⁰ 먼저 들인 아이가 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그 언니를 같은 과정을 거쳐 첩으로 들였다. 아버지가 장사에 실패해서 팔려 온 어린 자매였다. 남편이 그녀들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또 자신에게 우호적인 그녀들이 자신을 배척하지 않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 상황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박쿠렌은 “나는 질투 같은 것 가질 만큼 행복한 처가 아니”⁶¹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데려온 젊은 처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58 이 소설에서 박쿠렌은 자신과 가족의 이름은 바꿨는데, 아마모토는 이토 텐에몬이다.

59 柳原白蓮(2022) 下, p. 142.

60 柳原白蓮(2022) 下, p. 156.

61 柳原白蓮(2022) 下, p. 148.

무참하다. 19세의 처녀가 ...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가엾다. 그리고 그 남자의 불꼴사나움을 생각하면 ... 아니 그보다 나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여자인가. 같은 여자이면서 한 사람의 동성(同性)을 이렇게 만들고 정말 괜찮을까 생각하면 먼목 없이 나쁜 짓을 한 것 같았다.⁶²

이 자전적 소설을 쓴 것은 텐에몬과 이혼하고 류스케와 결혼 후에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 한 뒤이다. 그러므로 이 자서전에서 피력한 죄책감이 뒤에 자각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박쿠렌의 이른바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일’(人身御供)⁶³은 이 자매에게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류스케와 이혼 작전을 짜고 가출을 결심한 뒤에 박쿠렌은 다시 한번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던 유명한 게이샤를 거금을 들여 폐업시키고 첩으로 들인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 “텐에몬을 위로하기 위해 둔 첩”이었다.⁶⁴

사회주의자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1~1933)는 당시의 여자 유형을 귀부인, 주부, 창녀의 셋으로 나누고, “귀부인은 마음이 끌리지 않는 남자에게 생활을 위해 몸을 팔고,” “주부는 남편을 섬기고 위로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강제적으로 가정에 들어앉혀진 완전한 노예처지”이며, 하층남자가 노동을 파는 것 외에는 살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층계급의 여자 역시 “성을 파는 것 외에는 생활을 방법이 없다”⁶⁵고 당시 여자의 운명을 갈파했다. 이에 따르면, 몸을 파는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각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여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더 비참한 여자를 이용한 것이다.

62 柳原白蓮(2022) 下, p. 147.

63 박쿠렌 자신이 자전소설 『荊棘の実』에서 직접 사용한 말이다. 즉 『荊棘の実』 제18절의 제목이 ‘人身御供’이다.

64 永畑道子(1882), p. 54.

65 堺利彦, 「二種の婦人論」, 『婦女新聞』, 1906.2.5. 와카쿠와 미도리 지음(2007),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옮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p. 87에서 재인용.

박쿠렌은 류스케와 결혼한 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능력해서 ‘집안에만 있어야만 하는 여자’의 처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남편 류스케가 계급과 국경을 넘어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이었던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다. 도쿄제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일을 하던 류스케의 폐결핵이 재발한 탓에 박쿠렌이 신혼 3년 동안 병상에 있는 류스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해야 했던 ‘바깥 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류스케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유세를 대신하고 자신의 시를 적은 물건을 팔아 선거자금을 마련한 일도 포함되었다. 당시 한 여성잡지에서 구독자의 직업을 조사한 설문을 보면, 여성들이 진출한 직업은 교사, 타이피스트, 사무원, 간호사, 전화교환수 정도였음을 엿볼 수 있다.⁶⁶ 박쿠렌은 자신이 교사자격증을 따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⁶⁷ 결국 문필가라는 직업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남편의 ‘보증’하에 놓인 종속적인 존재에서 해방되어 남자처럼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1889년 제국헌법이 제정되고 이어 1890년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선거권은커녕 집회와 결사의 발기, 가입, 참여 등 모든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입헌정치가 확립된 해에 여성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1900년 공포된 치안경찰법은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를 첨가하면서 기존의 정치활동 금지를 강화했다.⁶⁸ 다이쇼 초기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여성해방운동은 1919년 ‘신부인협회’를 결성하는 데로 이어지고 신부

66 데비트·노ッター(2002), p. 55.

67 박쿠렌은 柳原白蓮(2022) 下, pp. 137-138에서 다음과 같이 후회한다. “지금부터 남편을 나를 길러준 부모라고 생각하자. 그렇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 몸이다. 이럴 거였으며, 시골에 있었을 때 학교교원 면허를 따서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야 했다. 설령 쓸 데가 없다고 해도 이러한 불안한 처지에 몸을 맡기고 있는 내가 뭔가 안전한 출구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는가. 그랬으면 똑같은 분함과 수치를 참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다를 것인데.”

68 와카쿠와 미도리(2007), pp. 85-86.

인협회는 치안경찰법의 일부폐지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22년 여성의 정치결사 가입은 여전히 금지되었으나 정치연설회 주최와 참가는 허용되었다.⁶⁹ 박쿠렌이 남편의 유세에 동행하고 나아가 남편을 대신에 연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 여성들의 지난한 투쟁 덕분이었다.⁷⁰

류스케의 아버지 도넨은 방법적으로 중국혁명을 먼저 실행하고, 그 힘으로 세계를 이상적으로 개혁한다는 꿈을 꾸며 물심양면으로 쫓원을 지원했다. 자기 가족의 안락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류스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류스케는 전국대중당, 전국농노(全國農勞)대중당, 사회대중당 등으로 무산계급을 점점 폭넓게 규합하는 당을 따라다니며 중앙위원이나 선거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류스케와 박쿠렌의 집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등, 누구든 곤란한 사람으로 붐볐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 대신 가계를 지탱할 때도 이들 식객까지 먹여살렸다.

한편, 박쿠렌은 자신보다도 더 가련한 처지의 여자들을 이용했던 죄를 참회하듯이, 노동총동맹의 협조를 얻어 유곽에서 탈출한 게이샤들의 자유폐업을 도왔다. 특히 그녀가 도와 자유의 몸이 된 전 창기 한 사람이 자신의 지난날을 담은 책을 발간함으로써 유명해진 그녀의 집은 자유를 꿈꾸는 창기들이 의지처로 삼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⁷¹

69 이노우에 키요시(2004), p. 365.

70 이은경(2021), 「제3장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노선 갈등, 1919~1922: 신부인협회의 역사와 그 의의」, 『근대 일본 여성 분투기: 일본과 여성의 관계사』, 한울아카데미, pp. 123-174는 그 시기 신부인협회의 역사와 그 안의 노선투쟁 들을 다루면서 당시 여성운동의 지평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71 모리 미쓰고(森光子, 1905~미상)라는 여성으로 에도시대의 공인 유곽인 요시와라 유카쿠(吉原遊廓)에서 지금의 고급창녀에 상당하는 오이란(花魁)이었다.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문학소녀였는데, 술독에 빠져 죽은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19세에 요시와라에 팔려가 하루코마(春駒)라는 이름의 창기가 된다. 그곳에 있으면서 복수로써 일기를 썼다고 한다. 2년 뒤에 잡지에서 읽고 알게 되어 동경하던 박쿠렌의 집으로 뛰어들어 도움을 청했고, 박쿠렌 부부와 노동총동맹의 도움으로 자유폐업했다. 1926년 박쿠렌이 서문을 쓴 일기 『光明に芽ぐむ日』를 발간했다. 1927년에는 『春駒日記』를 발간했다.

1872년 발포된 예창기해방령(芸娼妓解放令)에 의해 창기(娼妓)와 예기(藝妓)는 가불금(前借金)의 지불 없이 해방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의한 '창기 자영업'(娼妓稼業)은 허락되었다. 매춘업은 경시청과 지방관청이 창기를 관리하며 관리비를 징수하는 체제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즉 경찰의 관리하에 창기자영업을 하는 이른바 공창제가 탄생한 것이다.⁷² 창기나 예기의 전직을 돕는 조치가 없었고, 가난한 집 딸이 팔려 가는 상황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으니, 그들은 이제 경찰의 관리하에 창기가 되고 예기가 된 것이다.⁷³ 박구렌처럼 소수의 여자가 인격으로서 대접받으며 인간으로서 길을 내딛을 때, 가난한 가정의 딸들은 여전히 국가가 관리하는 매춘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6. 맺는말

남녀평등의 조항, 나아가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을 헌법 조항에 넣음으로써 최소한 법적으로 남녀평등을 규정한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남자가 남자인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타인인 여자를 집에 들이는 결혼은 여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만든다. 여자가 집 밖의 일을 넘보면 안 되었으므로 여자는 공적 영역의 무능력자로 취급되었다. 당연히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위한 교육도 차단되었다. 출산처럼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 외에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화족이든 평민이든, 정실부인이든 첩이든, 정실의 딸이든 첩의 딸이

72 関口すみ子(2015), 「雌鳥よ、夜明けを告げるな: 佐々城豊寿と初期廢娼運動が直面した困難」, 『法学志林』 113(1), pp. 81-82.

73 근대 일본의 廢娼運動의 역사에 관해서는 竹村民郎(1982), 『廢娼運動: 廓の女性はどう解放されたか』, 中央公論史: 小野沢あかね(2010), 『近代日本社會と公娼制度: 民衆史と國際關係史の視點から』, 吉川弘文館; 山家悠平(2015), 『遊廓のストライキ: 女性たちの二十世紀・序説』, 共和國 등을 참조하라.

든, 그들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던 화족 여자가 몰락한 아버지에 의해 팔려 첩이 된 여자를 착취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그렇다고 화족 여자의 처지가 하층계급의 여자보다 늘 좋았다고 할 수도 없다. 화족 여자들은 더 대단한 남자들의 도구였으므로 더 철저하게 무능력자로 취급된 면이 있었다. ‘화족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온실의 식물과 같이” “의지도 지력도 약했다”⁷⁴는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상류층 여성일수록 자신들의 남편들과는 대조적으로 “구시대적 일본”에서 살았으며, 새로운 시도가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⁷⁵ 가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삼종의 생애를 보내야 했던 무가 이상의 비생산적인 여성에 비하면, 서민의 여성은 생활은 고되도 예측성은 훨씬 약하고 어느 정도 의사와 행동의 자유를 가졌다고 한다.⁷⁶ 그러나 가산을 독점한 가독인 가정은 상층에서는 딸을 정략결혼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층에서는 “딸의 노동력을 딸 대신에 팔 수 있었다.”⁷⁷

1872년 발표된 ‘학제’에서 여자에게도 남자와 동일한 의무교육을 부과한 것이 잠깐이지만 근대일본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⁷⁸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후 실시된 각종 여자교육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메이지 초기부터 모리 아리노리나 나카무라 마사나오 등 구미사상의 영향을 진하게 받은 계몽사상가들조차도 “좋은 엄마→좋은 아들→좋은 나라”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있었다.⁷⁹ 여성의 눈을 사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정인 남성에게 봉사하는 순종적인 여성을 만드는 이른바 ‘현모양처’ 교육이 근대여성교육 정책으로 일치감치 자리 잡았으니, 근대에 들어서서도 여성

74 이은경(2021), p. 59에서 재인용.

75 이은경(2021), p. 67에서 재인용.

76 大竹秀男(1977), pp. 218-233.

77 西川祐子(2000), 『近代国家と家族モデル』, 吉川弘文館, p. 19.

78 와카쿠와 미도리(2007), p. 85.

79 小山静子(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p. 39.

은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전통적인 가 사상”이 이러한 기조의 근거에 있었으며, “서민층의 현실적 생활의식이나 서구적 개인주의 사상에 압도되면서도 가 사상은 강하게 살아남았다.”⁸⁰ 근대일본이 구축한 이른바 근대국가에서조차 가부장의 관리하에 있던 여성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주인도 아니었다.

태평양 전쟁의 패전을 계기로 호주제는 폐지되고 일부일처제는 흔들림 없는 젠더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가 강고한 규범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짓밟힌 수많은 ‘첩’의 존재에 눈길을 주면서, 일부일처제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학자도 있으니,⁸¹ 규범이라는 것의 뒤에 소외되고 짓눌려 있는 존재는 늘 동반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근대에도 ‘해방’되지 못한 여자들, 그 가운데서도 또 음지에 있었던 존재로서 서녀 박쿠렌을 통해 근대 일본 여성이 놓여 있던 질곡을 조명했다. 박쿠렌이나 그녀의 적녀 언니나 정략결혼을 위한 가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었지만, 첩에 대해 어린 박쿠렌이 갖고 있던 인식을 비롯해 ‘첩 사식 주제에’라고 말하는 전 남편들의 막말로 판단하건대, 인간의 자존감과 그 자존감을 처음으로 심어 줄 보호자의 존재 여부에서 서녀는 적녀와 같은 질의 삶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다. 아내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성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남편에게 기속하는 처의 처지에서, 박쿠렌이 누릴 수 있었던 호사는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인간시장에 팔려 나온 더 가련한 여인들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정도였을 것이다. 그 혜택 덕분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보호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났고, 그 해

80 大竹秀男(1997), p. 238.

81 石島垂由美(2023)은 페미니즘이 격한 자기검열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모든 여성이 한결 같은 피억압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천착한 것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일부일처제의 법제도와 젠더규범은 흔들림이 없어서, 일부일처를 상대화하는 첩이라 정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pp. 11-12.

택으로 익힌 능력 덕분에 경제적 유능함을 발휘하며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혜택 이전에 온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서도 한발 한발 내딛은 박쿠렌의 걸기가 근원에 있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박쿠렌 같은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확인하며 양지로 나오는 데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여성들의 지난한 노력이 있었지만, 또 그 와중의 한편에서는 붉은 고기로 팔리기 위해 시장에 나온 소돼지와 다를 바 없이, 딸의 처분권을 가진 아버지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던져진 어린 딸들이 이어졌다. 그러한 일들이 합법적으로 일어난 것이 멀지 않은 과거였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엄존하는 첩과 첩의 딸과 또 창녀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존재는 여권의 놀라운 진보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가 공존함을 웅변한다.

주지하듯이 동아시아의 근대, 특히 일본과 한국은 근대화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여성해방 운동에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역사와 전통의 차이에서 근대화 과정과 그 결과가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은 현대의 한국과 일본 사회의 차이가 보여 주는 대로다. 이 글을 통해 한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이 유학의 강한 영향하에서 적자중시의 종법제적 가부장제였던 것에 반해, 일본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였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적서의 차별을 무겁게 했던 종법제와는 달리 일본의 가제도나 남자상속을 강조함으로써 귀족의 여자조차도 인간의 걸가지로 취급하였다. 조선의 양반가 출신의 부인은 일본의 화족 부인보다 더 존중받는 존재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비롯해,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특수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으로 주의해서 볼 문제다.

참고문헌

- 김영경(2023), 「한국 근대소설과 근대 제도로서의 離婚: 廉想涉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99.
- 와카쿠와 미도리(2007),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옮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 이노우에 키요시(2004), 성해준·김해준 옮김, 『일본여성사』, 어문학사.
- 이은경(2021), 『근대 일본 여성 분투기: 일본과 여성의 관계사』, 한울아카데미.
- 関口すみ子(2015), 「雌鳥よ、夜明けを告げるな: 佐々城豊寿と初期廢娼運動が直面した困難」, 『法学志林』 113(1).
- 久留島典子·長野ひろ子·長志珠絵 編(2015), 『ジェンダーから見た日本史』, 大月書店.
- 大竹秀男(1977), 『家と女性の歴史』, 弘文堂.
- 山家悠平(2015), 『遊廓のストライキ: 女性たちの二十世紀・序説』, 共和國.
- 森岡清美(1999), 「明治初期の華族社会における妾」 『淑徳大学社会学部研究紀要』 33.
- 西川祐子(2000), 『近代国家と家族モデル』, 吉川弘文館. 石島亜由美(2023), 『妾と愛人のフェミニズム』, 青弓社.
- 小山静子(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 小野沢あかね(2010), 『近代日本社会と公娼制度: 民衆史と國際關係史の視點から』, 吉川弘文館.
- 深町純亮(1991), 「柳原白蓮の生涯」, 『エネルギー史研究: 石炭を中心として』 15.
- 阿賀佐圭子(2016), 『柳原白蓮: 燐子の生涯』, 九州文学社.
- 永畑道子(1882), 『恋の華·白蓮事件』, 新評論.
- 早川紀代(1998), 『近代天皇制とジェンダー: 成立期の一つのロジック』, 青木書店.
- 竹村民郎(1982), 『廢娼運動: 廓の女性はどう解放されたか』, 中央公論史.
- 中西洋子(2012), 「柳原白蓮における歌の変容と到達: 最終歌集『地平線』をめぐって」, 『目百大学人文学研究』 8.
- 中西洋子(2023), 『流転の月: 柳原白蓮ノート』, 角川書店.
- デビット·ノッター(2002), 「恋愛至上主義のアクセプタビリティへの一考察: 大正期における恋愛結婚言説とその変容」, 『ソシオロジ』 45(3).
- 스ミス, H. 著(1978), 松尾尊兌·森史子 共譯, 『新人會の研究: 日本學生運動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柳原白蓮(2022), 『白蓮自叙伝·荊棘の実』 上(電子書籍), デイスクワアー·トウエンティワン.

원고 접수일: 2024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5월 10일

ABSTRACT

The Tumultuous Era of Modern Japan and Experiences of Women through the Lens of a Daughter of a Concubine

Yi, Hye Gyung*

In this article, I explore how Japanese society structured and regulated the lives of women by focusing on Byakuren Yanagiwara, a daughter of a concubine from Japanese nobility. My objective was to understand how the lives of women — concubines and their daughters — were affected by the challenges they faced during Japan's modernization, including the abolition of class distinctions and women's pursuit of citizenship. Initially, I provide a concise overview of Byakuren's life. Subsequently, I delve into societal transformations, encompassing legal reforms and revisions, which significantly impacted her individual experiences. In particular, I analyze how Byakuren's two marriages — arranged by familial authority — mirror a society where women were perceived as socially subordinate within a male-dominated patriarchy, often serving as mere pawns in political unions. The context behind Byakuren's third marriage, characterized by free choice, lies in the socio-cultural milieu of the Daisho era, where discussions around

free love and individuality were prominent. Furthermore, I highlight how Byakuren evolved into a significant figure through her active involvement in her husband's election campaign and her direct role in the liberation of the harlot, extending beyond mere economic support for her family.

Keywords Daughter of Concubine, Byakuren Yanagiwara, Male-dominated Patriarchy, Modern Japan

